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-6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6. .

발 의 자 : 강명숙 외 1명

1. 수정이유

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확대 및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“주민을 대표”를 삭제함.

나. 안 제3조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공덕동, 용강동, 서강동, 서교동, 성산 2동으로 규정함.

다. 안 제14조제3항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2년, 1회 연임에서 2년 단임제로 변경함.

라. 부칙 안 제2조에 조례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 제1호에 “주민을 대표하여”를 삭제한다.

같은 조 제2호에 “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”을 “해당 동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에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덕동, 용강동, 서강동, 서교동,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14조 제3항에 “2년으로 하고,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”를 “2년 단임제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.

제3조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9조,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주민자치회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<u>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주민자치회 위원” 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란 <u>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설치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할 지역의 동에 <u>주민자치회</u>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설치) ① ----- ----- <u>한다</u>)은 주민의 <u>의견을 수렴하여</u> -----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설치되고 주민자치와</u>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<u>해당 동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설치) ① ----- ----- <u>한다</u>)은 공덕동, 용강동, 서강동, 서교동, 성산2동에</p>

<p>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고</u>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 <u>하고,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</u> -----.</p>	<p><u>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<u>2년 단임제로 한다.</u></p>
---	---	--